



법조인 동정

## 前 대한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위헌... 즉시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등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두현(96·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승서(93·판,검사 특별임용시험 2회), 함정호(87·고시 9회), 정재현(85·고시 13회), 천기홍(52·사법연수원 32기), 이진강(79·사시 5회), 신영무(78·사시 9회), 하창우(78·15기), 김현(66·17기), 이찬희(57·30기) 변호사 등 대한변협 전직 협회장 10명은 18일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설명을 내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으며,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로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한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과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률신문)